

2013. 12.

---

# 금산 문화예술시설 활성화 방안

---

선임연구위원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 【 목 차 】

## 1. 지역 여건분석과 과제

- ① 금산군 문화예술 환경여건 ..... 1
- ② 금산읍 다락원 및 주변 문화예술시설 현황 ..... 4
- ③ 금산 문화예술시설 활성화를 위한 과제 ..... 9

## 2. 사업구상

- ① 사업목표 ..... 11
- ② 사업구상 ..... 12
- ③ 공간 및 부문별 사업구상 ..... 13

## 3. 금산 문화예술시설 활성화 사업계획

- ① 다락원 문화지구 조성방안 ..... 16
- ② 금산인삼 공립박물관 및 임희재 문학관 건립 ..... 25
- ③ 문화예술 광장과 문화카페 조성 및 이벤트 개최 ..... 27
- ④ 문화거리 및 주변 관광지 연계 솔래길 조성 ..... 29
- ⑤ 지구촌박물관 이전 및 금산학 문화아카데미 운영 ... 31

## 4. 사업추진 방안

- ① 사업추진계획 ..... 34
- ② 지역주민 참여방안 ..... 36

# 1.

## 지역여건 분석과 과제

### 1) 금산군 문화예술 환경여건

#### ① 문화시설 현황

- 금산군에는 공연장, 영화관, 문화의집 등 9개의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금산읍에 편중되어 있으며, 읍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함
- 금산군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비교적 많은 문화기반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인구수에 비해 많은 규모의 시설이 설립되었음

[표 1] 충청남도 시군별 문화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총계	박물관	미술관	공공 도서관	시군민 회관	공연장	영화관	문화복 지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 회관	청소년 시설
충남	157	10	7	18	9	32	16	25	14	7	15	4
천안시	13	-	-	1	-	9	3	-	-	-	-	-
공주시	11	1	1	2	-	1	1	1	1	1	1	1
보령시	14	1	1	2	-	2	1	5	1	-	1	-
아산시	9	1	1	1	-	3	-	1	1	-	-	1
서산시	7	-	-	1	1	1	1	2	1	-	-	-
논산시	10	1	1	-	1	2	2	1	1	-	-	1
계룡시	0	-	-	-	-	-	-	-	-	-	-	-
<b>금산군</b>	<b>13</b>	<b>-</b>	<b>1</b>	<b>4</b>	<b>1</b>	<b>2</b>	<b>1</b>	<b>1</b>	<b>1</b>	<b>-</b>	<b>1</b>	<b>1</b>
연기군	5	-	-	1	1	1	-	1	1	-	-	-
부여군	14	1	-	1	1	1	1	1	1	1	6	-
서천군	10	-	-	1	1	-	1	-	1	4	2	-
청양군	5	-	-	1	-	3	-	-	1	-	-	-
홍성군	13	1	-	1	1	3	3	1	1	1	1	-
예산군	6	2	1	-	-	1	-	1	1	-	-	-
당진군	20	1	1	1	1	2	2	9	1	-	2	-
태안군	7	1	-	1	1	1	-	1	1	-	1	-

주 : 본 자료는 통계연보 상의 자료로 실제 현황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11

- 금산군의 문화기반시설은 총 17개로, 이 중 도서관이 8개소로 가장 많이 조성

되어 있으며, 박물관, 전시관, 문화원 등 주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금산읍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

- 금산군의 도서관은 금산인삼고을도서관, 금산기적의도서관, 추부도서관 등 지자체 소관의 도서관 3개소와 교육청 소관의 금산도서관을 포함한 총 4개의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음.
- 주민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2012년 기준 총 4개의 도서관이 개관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속 확충될 예정임
- 금산군내 박물관은 총 3곳이며, 칠백의총기념관은 국립박물관으로 사적105호로 지정된 곳에 1976년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

[표 2] 금산군 문화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개관년 도	비고	
			부지	건물			
문화 시설	문예회관	금산다락원	금산읍 금산로 1559	-	12,840	2004년	공립
	문화원	금산문화원	금산읍 금산로 1557	-	1,200 (3층)	1968년	공립
	문화의 집	추부문화의 집	추부면 마전리 420-8	-	612.9	2000년	공립
		금산문화의 집	금산읍 방아동4길 17	-	1,124	2003년	공립
전시 시설	박물관	칠백의총기념관	금산읍 의총길 50	-	187	1976년	국립
		금산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금산읍 금산로 1543	39,333	1,314	2006년	공립
		태영민속박물관	남이면 하금평촌길 26	3,300	400	2001년	사립
	전시관	금산향토관	금산읍 금산로 1575	10,643	1,523	2009년	공립
		금산인삼관	금산읍 인삼광장로 30	8,786	4,173	2011년	공립
도서관	공공도서 관	금산도서관	금산읍 상옥2리 467-160	1,718	1,169	1989년	교육청
		금산인삼고을도서관	금산읍 금산로 1543	394	1,566	2007년	지자체
		금산기적의도서관	금산읍 향교길 24 (상리 7-10)	1,717	529	2005년	지자체
		추부도서관	추부면 마전리 420-8	2,041	564	2009년	지자체
	작은도서 관	금산작은도서관	금산읍 방아동4길 17 금산문화의집	-	-	2008년	공립
		상리주공2단지 작은도서관	금산읍 상리 1112번지 주공아파트 2단지	-	-	2010년	사립
		제원면 작은도서관	제원면 제원리 153-7	-	-	2010년	공립
		군북면 작은도서관	군북면 두두리	-	160	2011년	공립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2013

- 금산읍과 추부면에서는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무용·재즈댄스, 요가, 탁구·미술·한자·농악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3] 금산군 문화시설

구분	위치	시설규모 (연면적)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공연 유료 관객	총이용자 수
			객석 수	연면 적	객석 수	면적	개수	면적		
금산다락원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12,840	727	1,260	250	246	2	543	4,297	73,765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7	49	-	-	-	-	-	-	-	260 (회원수)
추부문화의 집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420-8	612.9	-	-	-	-	-	-	-	32,901
금산문화의 집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4길 17	1,124	-	-	-	-	-	-	-	50,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2013

## ② 문화예술단체 활동 현황

- 금산군에는 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금산문화원을 비롯해서 총 8개의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 문화예술 강좌 및 동아리 육성, 농악공연 등 다양한 정기공연, 전시회, 창작물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금산군에는 군립 합창단이나 무용단 등 예술단은 운영하고 있지 않음
- 2006년 금산문화예술발전소, 2009년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금산지회 창립 등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금산문화원과 문화의 집은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속의 문화체험, 문화창작공간으로 지역의 재능있는 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음
- 특히, 문화의 집 동아리들은 연합을 이뤄 ‘어깨동무’라는 이름으로 풀뿌리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있음

[표 4] 금산군 문화예술단체 현황

단체명	창립년	회원수	주요 기능
금산문화원	1967. 11. 18	475	문화예술강좌 및 동아리 육성
금산문화의집	2000. 5. 20	550	문화예술강좌 및 동아리 육성
추부문화의집	2003. 5. 1	1,400	문화예술강좌 및 동아리 육성
금산 농악보존회	1991. 3	35	농악연습 및 공연
인삼골합창단	1989. 10	45	합창단 연습 및 공연
(사)대한시조협회금산군지회	1990. 2. 13	40	시조 경창, 시조 활성화
금산문화예술발전소	2006. 3. 17	31	연주공연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금산지회	2009. 7. 9	120	문화예술역량강화 및 후진양성 등

자료 : 금산군 내부자료, 2012

## ② 금산읍 다락원 및 주변 문화예술시설 현황

### ① 금산 다락원 현황

- 금산군의 문화복지건강센터인 ‘다락원’에는 생명의집(문예회관), 도서관, 청산회관, 문화원, 건강의집(보건소), 스포츠센터, 만남의집(관리동), 청소년의집, 장애인복지센터, 여성의집, 농민복지센터, 노인의집 등이 위치하고 있음

- 생명의집 : 대공연장(796석), 소공연장(280석), 전시실 등 공연행사
- 만남의집 :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평생학습센터로 연구·교육의 기능
- 장애인·청소년의집 : 일반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 건강증진실, 노래방 등이 마련되어 있음
- 노인의집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 운영
- 여성의집 : 요리실습실, 생활교육실 등 여성들로 구성된 모임을 통한 각종 정보 공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 농민복지센터 : 최신 영농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정보화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랑방으로 구성
- 스포츠센터 : 수영장, 체력단련실, 실내체육관 등 시설 운영



[그림 1] 다락원

## ② 금산향토관 현황

### □ 조성목적

- 금산향토관은 인삼약초의 고장인 금산의 역사·생활·농악 등 향토문화를 한 눈에 보고 배울 수 있는 전시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
- 금산인의 손때 묻은 옛 생활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 시설현황

- 위 치 : 금산읍 중도리 203-28번지
- 사업기간 : 2008.09.22 ~ 2008.12.29(리모델링)  
2009.02.02 ~ 2009.06.10(금산역사농악전시관 조성)  
2009.03.18 ~ 2009.06.18(생활민속전시관 조성)
- 사업량 : 건물 1동 / 연면적 2,046.64㎡
- 사업비 : 1,137백만원(리모델링), 300백만원(역사농악전시관)  
200백만원(생활민속전시관)
- 사업내용 : 문화 및 집회시설(농악전시관, 생활민속전시관, 금산역사문화관, 농악체험관, 학습체험실, 회의실, 예식장 등) 조성
- 규모

동별	층별	주용도	면적(㎡)	세부용도
1동	1층	금산역사관	389.11	금산의 역사를 테마로 전시물 조성
		금산농악관	311.58	금산의 농악과 관련 악기 및 소품등 전시
		생활민속관	244.4	각 읍면 전시기증유물 전시
		농악체험실	85.5	악기를 실제로 다루어 농악체험
	학습체험실	74.97	전시관 방문객들 대상 학습체험	
	2층	다목적회의실	395.65	회의장 및 예식장 겸용
2동	1층	휴게실	48.6	방문객 대상 휴게공간

□ 부대시설

- 인삼광장(주차174대), 행복공원(계류형 연못, 정자, 물레방아), 인삼종주지 상징 초대형 모자인삼상 15m, 인삼 열주기둥(블로문)

□ 그 동안 추진현황

- 2008.09.22 : 구 인삼관광농원 리모델링 공사 착수
- 2008.12.29 : 구 인삼관광농원 리모델링 공사 완료
- 2009.02.02 : 금산역사농악전시관 전시시설 제작설치 입찰공고
- 2009.03.18 : 생활민속전시관 전시시설 제작설치 입찰공고
- 2009.06.10 : 금산역사농악전시관 조성완료
- 2009.06.18 : 생활민속전시관 조성완료
- 2009.06.18 : 금산향토관 개관식

□ 관람안내

- 관람시간 : 하절기 09:00 ~ 18:00(3월~10월)/동절기 09:00 ~ 17:00(11월~2월)
- 휴 관 일 : 법정공휴일 · 매주 월요일

### ③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현황

□ 설치목적

-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은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의 독특한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임

□ 운영개요

- 연 혁 : 2006.09.22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개관(금산인삼관 지하1층)  
2010.07.05 금산인삼관에서 청산회관 2,3층으로 전시물 이전
- 위 치 :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04-8번지  
청산회관 지상2층(제1관), 3층(제2관)
- 규 모 : 제1관(지상2층) 333㎡, 제2관(지상3층) 346㎡
- 전시유물 : 총 300여점의 유물전시

제 1 관 → 민속악기, 민속공예품, 지팡이, 인물상, 동물상, 문방구

제 2 관 →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생업용품, 무기류, 가면인물상

□ 관람안내

- 관람시간 : 하절기 09:00 ~ 18:00(3월~10월)/ 절기 09:00 ~ 17:00(11월~2월)
- 관람요금 : 무료
- 휴 관 일 : 법정공휴일, 매주 월요일



제1관 안내데스크



제1관 민속악기



제1관 인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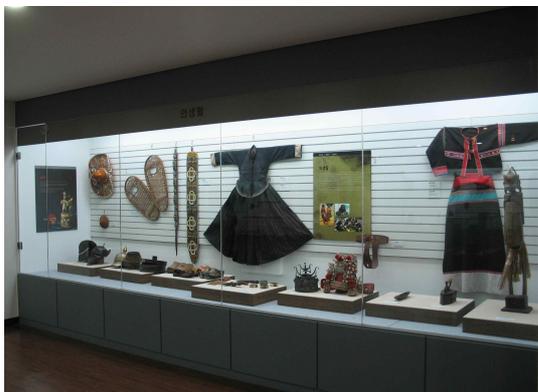
제1관 문방구



제2관 아프리카



제2관 가면인물상



제2관 의생활



제2관 주생활

[그림 2] 지구촌 생활민속박물관 전시시설 전경

#### ④ 임희재문학관 건립(예정)

##### □ 건립배경

- 임희재는 금산이 낳은 대중문학가이다. 1919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609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955년 <寄留地>(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였다. 그 후 <복날>, <무허가 하숙집>, <꽃잎을 먹고 사는 기관차>, <고래> 등 5편의 희곡을 발표하였고, 미발표작 <모의자살>까지 합하여 총 6편의 희곡을 쓴 작가이다. 1958년 현대문학 희곡부문 신인상을 받았다. 그 후 희곡보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명성을 얻었다. 1971년 드라마 <아씨>를 비롯하여 300여 편의 드라마와 가요를 집필하였다. 소외되고 방황하는 군중들을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부조리한 모습을 비판하는데 역점을 둔 작가이다. 그가 집필한 시나리오는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고 당시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순수문학에 비해 평가절하 된 시기여서 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중성과 문학성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고 한류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대와 맞춰 대중문학가로서 임희재는 재평가 되어야 한다.
- 작가 임희재에 대한 연구나 업적에 대한 과소평가로 연구에서 소외되었다. 순수문학을 하는 작가에 밀려 임희재문학을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사실이다. 대중문화의 활성화로 그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 □ 문학관 건립방향

- 문학관 건립 입지는 청산회관 별관이나 향토관이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와 관련하여 행사를 진행한다면 향토관이 그 중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주차시설과 영화상영, 창작 공간 등 두루 갖추고 있고, 주변의 전시물도 많아 향토관의 일부를 활용하면서 예술제를 병행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학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작가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좋다. 그 외 북 카페나 영사실, 세미나실, 작은 도서관이 함께 있어야 하며 수장고 등의 부대시설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념관을 건립한다면 청산회관 별관이나 향토관 주변에 입지하는 것이 좋다.

##### □ 운영방안

- 국내 문학관의 경우 유료 문학관은 12개(입장료는 2000원 -4개소, 1000원 -4개소이며 가장 비싼 곳은 5000원을 받음)이며 개인 입장보다는 단

체 입장이 많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학예사)을 확보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사업의 재정적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

### **③ 금산 문화예술 시설 활성화를 위한 과제**

#### **① 금산읍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복합 및 거점 기능 강화**

- 금산읍 문화예술시설은 금산로 1559번지 일원의 금산다락원을 비롯하여 금산문화원, 금산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금산향토관, 금산인삼고을도서관 등 입지
- 이와 같이 금산로 한 지구에 문화예술시설들이 집중해 있으므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복합 및 거점기능을 강화해야함.

#### **② 다양한 문화 관련 시설들을 연계하는 활용성 제고**

- 금산로변의 금산다락원, 금산문화원, 금산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금산향토관, 금산인삼고을도서관 등을 서로 연계하는 기능과 동선이 필요
- 이를 위해 각 문화 관련 시설들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정비하고, 문화거리(산책로)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함

#### **③ 각 문화예술시설과 공간에 대한 차별화된 명소화**

- 금산다락원, 금산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금산향토관, 금산인삼고을도서관 등은 각기 다른 특성과 기능의 문화시설로 차별화가 필요
- 따라서, 각 문화예술시설별로 기존 시설들을 활용한 문화행사 및 이벤트 등으로 명소화를 통한 방문객 유치에 노력

#### **④ 문화예술시설간 연계한 문화거리 조성을 통한 문화지구화**

- 금산읍의 문화예술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문화예술시설 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을 연계하는 도로망을 구축하여 문화지구로 육성해야함

- 문화지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각 시설간 연결도로에 문화거리, 비호산과 칠백의총을 연결하는 숲래길 조성

### ⑤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유인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추진

- 문화예술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별로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나 이벤트를 년 중 개최토록 기획해야함.
- 나아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나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금산인삼축제나 문화의 달 등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최



[그림 3] 금산 다락원 및 주변 위성영상 전경

## 2.

# 사업구상

### 1 사업목표

#### ① 목표

- 금산군민의 문화예술활동 거점 육성
-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예술 명소화

#### ② 추진방향

##### ■ 금산군민 문화와 예술 활동의 중심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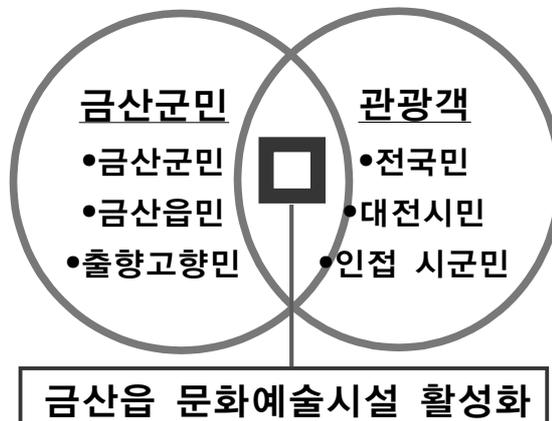
- 다락원을 중심으로 군민들이 상시에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거점으로 육성
- 금산향토관, 금산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등 문화시설·공간 활용성 강화

##### ■ 문화예술시설과 공간, 문화행사 등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육성

- 금산군 문화예술시설과 공간을 재정비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 특색있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 개최를 통한 관광축제로 발전

##### ■ 문화지구 조성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명소화

- 문화예술시설과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육성
- 군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즐기는 문화예술의 명소로 개발



## ② 사업구상

### ■ 금산 남부권 체육문화의 거점센터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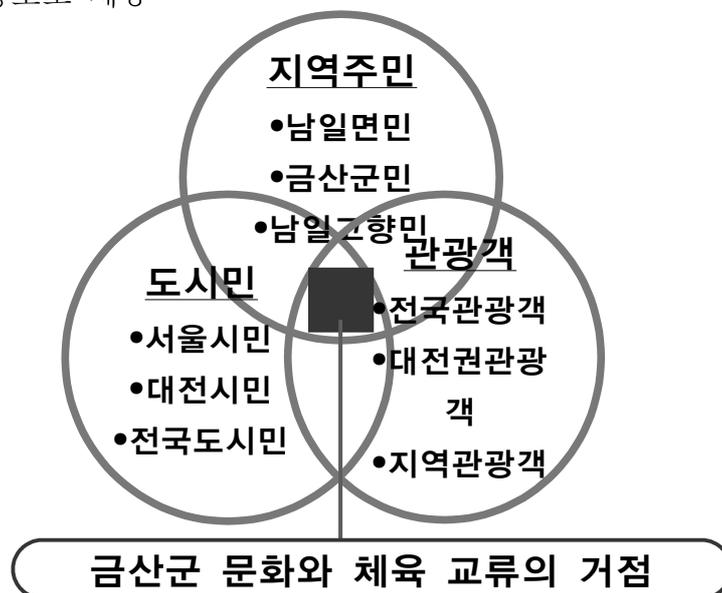
- 금산군 남부생활권에 있는 남일면, 남이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과 운동 등 건강관리를 체육센터로 육성
- 지역주민들의 농악 및 민속놀이, 전통문화 및 예술, 취미활동을 위한 공동문화 거점지구로 조성

### ■ 금산군과 대도시주민의 도농문화체육교류의 장으로 육성

- 금산군과 서울시 등 대도시의 문화교류를 위한 전통문화행사 및 농악과 민속놀이 등의 교육 및 연수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
- 서울시 및 도시민들의 체육행사와 금산군과의 친선스포츠 행사장으로 육성하여 각종 체육행사 개최

### ■ 관광객 운동과 휴양의 관광기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 금산군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각종 레포츠와 운동·위락활동을 위한 레포츠공간 및 시설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
- 단체 및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휴양·놀이활동 장소로 제공



### 3 공간 및 부문별 사업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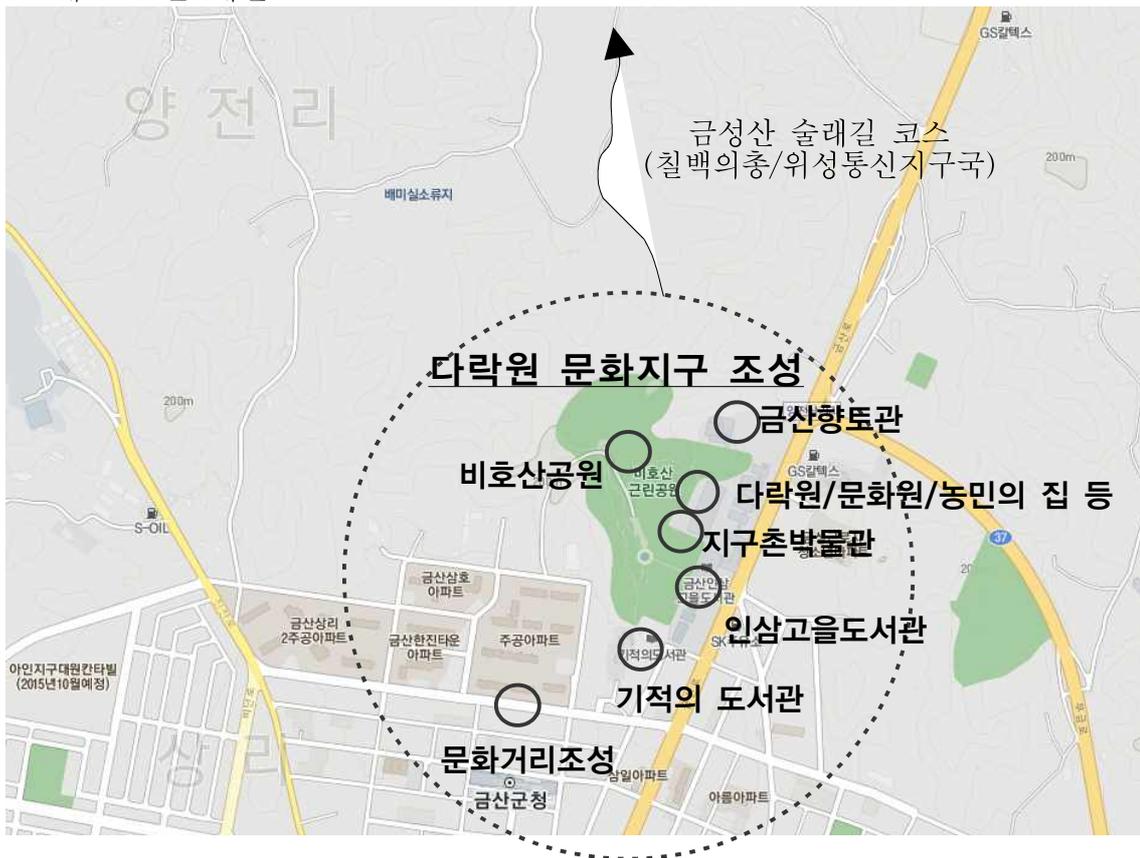
#### 1 공간구상

##### ■ 다락원 문화지구 조성

- 다락원을 중심으로 금산향토관, 지구촌박물관, 인삼고을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등을 금산문화예술 거점화를 위한 문화지구로 조성
- 문화예술시설뿐만 아니라 비호산근린공원, 금산향교, 임희재문학관(건립예정) 등을 포함하여 양전사거리(회전교차로 및 상징물 건립추진)의 문화거리로 조성 확대

##### ■ 주변 역사유적지 및 슬래길 연계 코스 개발

- 다락원 문화지구에서 인접한 칠백의총과 위성통신지구국을 슬래길로 연계되는 관광코스를 개발
- 또한, 37호도로를 따라 인근의 인삼약초시장과 연결되는 금산읍의 시내관광 연계 코스를 개발



## ② 부문별 사업구상

### ■ 다락원 문화지구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

- 다락원과 주변의 문화예술시설 및 공간 등을 통합적인 중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화지구 지정 사업 추진
- 문화지구 지정 및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 문화예술시설이외에 주변 비호산공원과 금산향교, 금산인삼탑 등과 양전삼거리 등을 포함하여 조성사업 추진

### ■ 문화예술시설 및 공간별 활성화 사업 추진

- 다락원 및 주변 문화예술시설 및 공간의 진단을 통해 이용객 유치 촉진을 위한 활성화 아이템을 발굴
- 각각 문화예술시설이나 공간별로 다양한 이벤트 및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추진

### ■ 문화예술 광장 조성 및 문화이벤트 정기 개최

- 문화지구로 통합적 중심 기능을 문화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문화예술광장을 현재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조성
- 문화예술광장에서 문화예술시설 및 공간과 연계한 문화이벤트를 주간, 월간, 연간 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정기 개최

### ■ 문화예술시설 및 공간 연계 문화거리 조성

- 문화지구 중심광장과 각 문화예술시설 및 공간을 연결하는 도로망과 문화통로를 조성
- 문화예술시설과 공간뿐만 아니라 금산읍의 시내와 주거지역, 주변의 관광지로 연결되는 문화거리와 술래길을 조성

## ■ 지구촌박물관 이전 조성 및 금산학 문화아카데미 운영

- 기존 청산회관내의 지구촌박물관을 현재 다문화센터에 다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이전하여 다문화지원 및 세계문화예술시설로 육성
- 청산회관의 지구촌박물관 이전장소는 현재의 문화강좌와 연계하여 금산학 문화아카데미 교실을 개설하고, 금산학 역사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 ■ 문화지구 주변 연계 관광코스과 슬래길 관광자원화

- 다락원과 문화예술시설 및 공간이 집중한 문화지구는 금산읍의 인삼약초시장, 주변 칠백의총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
- 특히, 금성산 슬래길과 연계하여 금산군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걷기여행을 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추진

[표 6] 금산 문화예술시설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사업구상

구 분	추진 방향	사업 구상
다락원 문화지구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	금산 문화예술 활동 중심지구 조성 및 운영	다락원 문화지구 지정 사업, 비호산근린공원 및 양전삼거리 등 문화시설·공간 조성 과 주변 도로변 문화 관련 영업시설 유치
문화예술시설 별 활성화 사업 추진	문화예술시설 및 공간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다락원 공연 및 전시, 금산향토관 민속행사와 관광체험행사 개최, 도서관'북페스티벌'개최, 청산회관 금산학 문화아카데미 운영 등
문화예술 광장 조성 및 문화이벤트 개최	문화예술 중심 기능 광장 조성 및 문화이벤트 정기 개최	금산향토관 주차장 또는 청산회관 앞 주차장에 문화예술광장 조성, 월별 전통민속공연 및 문화이벤트 정기개최 등
문화예술시설 및 공간 연계 문화거리 조성	각 문화예술시설·공간 연결 문화거리 및 걷고싶은 길 조성	금산로와 비단로 문화거리 조성, 비호산공원 둘레 슬래길 조성,
지구촌박물관 이전 조성 및 문화아카데미 운영	다문화회관(지구촌박물관) 건립 및 금산학 문화아카데미 운영	청산회관 지구촌박물관 다문화회관 건립 이전, 청산회관에 금산학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문화지구 주변 연계 관광코스과 슬래길 관광자원화	금산읍 및 금성산 슬래길 연계 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자원화	다락원 문화지구~금산인삼약초시장 연결 문화거리 조성(무금로/비단로) 다락원/비호산~위성통신지구국~칠백의총~ 금성산 슬래길 관광코스 개발

### 3.

## 금산 문화예술시설 활성화 사업계획

### 1 다락원 문화지구 조성방안

#### 1 문화지구 제도 개요<sup>1)</sup>

##### ■ 관련 법규 검토

- 문화지구제도는 문화지구를 보전·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당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표 5] 문화지구 관련 법규

지역	구 분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문화지구의 지정 문화지구의 관리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지정보고 및 평가
문화예술진흥조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문화지구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지구 지정
도시계획 조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문화지구의 지정 (용도지구지정)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문화지구의 지정 (용도지구지정)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문화지구의 지정 (용도지구지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문화지구의 관리, 육성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문화지구의 관리, 육성

##### ■ 관련 법규의 세부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법규상 문화지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지구에 관한 제도의 원고는 김연진(2011), 문화지구제도 개선 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기본과제 연구자료를 요약정리하였다.

[표 6] 문화지구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구분	내 용
<p>법 제8조</p>	<p>(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p> <p>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하 "문화시설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li> <li>2.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li> <li>3.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li> </ol> <p>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그 문화지구에 설치하는 운영을 권장하는 화시설등의 종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p> <p>④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li> <li>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i> <li>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li> </ol> <p>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시행령 제5조</p>	<p>(문화지구의 지정)</p> <p>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다.</p> <p>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란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을 말한다.</p> <p>③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문화환경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p>시행령 제6조</p>	<p>(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p> <p>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li> <li>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제1종 지구 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li> <li>4.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li> <li>5.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작성하려면 해당 문화지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공보(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시행령 제7조</p>	<p>(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p> <p>①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li> <li>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li> </ol>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p>

구분	내 용
시행령 제8조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로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은 별표 1의 문화시설과 제5조제2항의 영업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을 말한다.
시행령 제9조	(문화지구 지정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령 제10조	(관리계획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집행 상황을 관리계획 승인일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로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령 제11조	(문화지구의 제한 업종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9.8.6> ② 시·도지사가 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문화지구 안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을 정하려면 그 문화지구의 문화자원·역사 등의 특성과 지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지구를 지정한 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문화지구를 육성·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문화지구의 지정을 포함하기도 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상 문화지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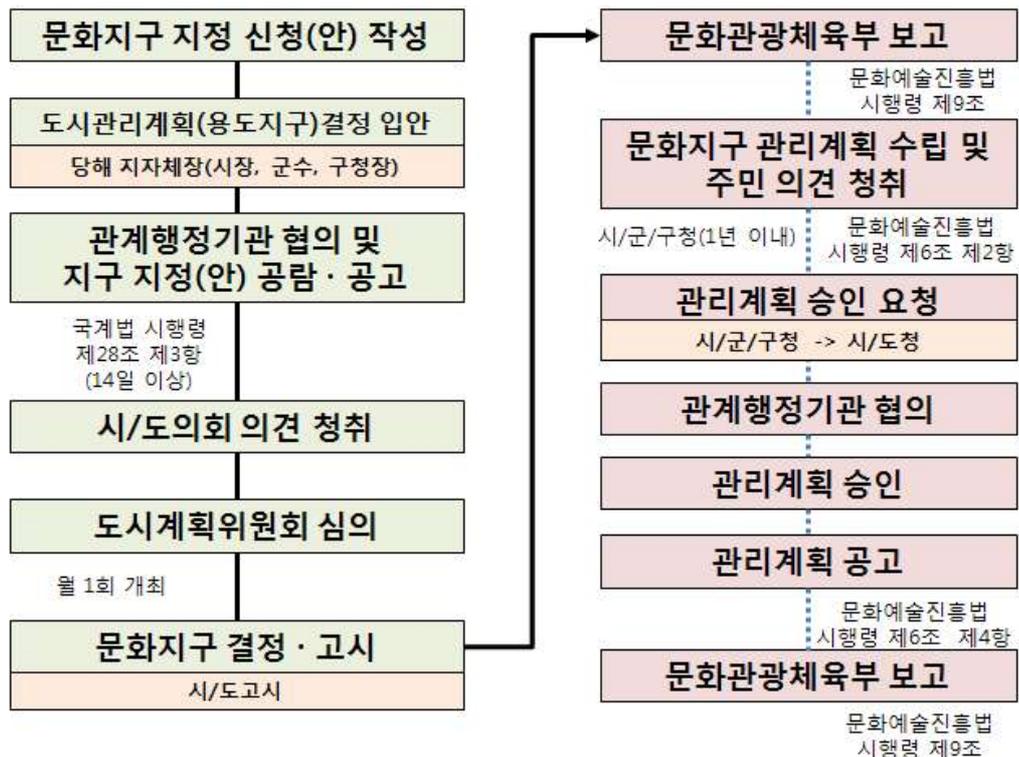
[표 7] 문화지구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례

구분	내 용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	(문화지구의 지정)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음

## ■ 문화지구 지정절차와 주요 내용

- 2000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적 특성을 유지·발전시켜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지구제도’가 도입되었음. 문화지구제도는 지역 내 문화지원을 보호·육성하여 당해 문화지원이 지역 자체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문화화 된 지역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을 문화적으로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문화지구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되며, 크게 지정,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운영·관리, 평가의 체계로 이루어짐.

- 문화지구제도의 목적을 세분화 하면 다음과 같음.
  - 보존 육성하고자 하는 특정분야의 문화예술 특성을 체계적으로 보존·발전
  - 밀집한 관련업종 및 시설들 간의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집적의 경제성을 달성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 지역의 정체성 및 이미지 형성에 기여, 장소마케팅 요소로 활용
  - 관광객 증가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증대
  - 지역 주민 소득향상, 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지구 지정단계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장 제8조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하고 있음.
  - 지정대상은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영업시설 밀집지역이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문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로서 문화지구를 지정하며,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이를 관리함.



[그림 4] 문화지구 지정절차

- 문화지구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해당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항에 따라 해당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문화지구에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 지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b>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b>
<p>1. 공연시설</p> <p>가. 공연장: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p> <p>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공연장</p> <p>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p> <p>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p> <p>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p> <p>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p> <p>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p> <p>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p>
<p>2. 전시시설</p> <p>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p> <p>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p> <p>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p> <p>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p>
<p>3. 도서시설</p> <p>가. 도서관: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p> <p>나. 문고: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p>
<p>4. 지역문화복지시설</p> <p>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p> <p>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p> <p>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p> <p>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p>
<p>5. 문화 보급·전수시설</p> <p>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p> <p>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p> <p>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p>
<p>6. 그 밖의 문화시설</p> <p>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p>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용을 권장하

는 문화시설 등은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을 의미함.

- 문화지구 내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현재 문화지구에 적용되는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내용은 당해 지역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문화지구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이 포함됨.

문화지구 지원내용
-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권장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용자
-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용자
- 그 밖에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 개발, 주민협의회 운영 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을 직접 임차하여 권장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을 입주하게 할 수 있음
- 도지사·시장·군수는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용자를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용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리차액을 보전할 수 있음

## ② 문화지구 지정현황과 특징

### ■ 문화지구 지정현황

- 현재까지 인사동, 대학로,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등 4개의 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음. 인사동, 대학로 등 전통적인 문화자원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시장경쟁에 취약하나 역사적 의미나 비경제적 가치를 가진 문화자원(특히 역사문화자원의 밀집지역)의 가치가 주목됨에 따라,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문화지구 제도 도입되었음.

### ■ 헤이리 문화지구 사례

#### ① 지정배경

- 헤이리 문화지구는 보존을 중점으로 한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와는 달리 문화·예술의 육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되었음. 문화예술 관련 마을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지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9년 2월 경기도 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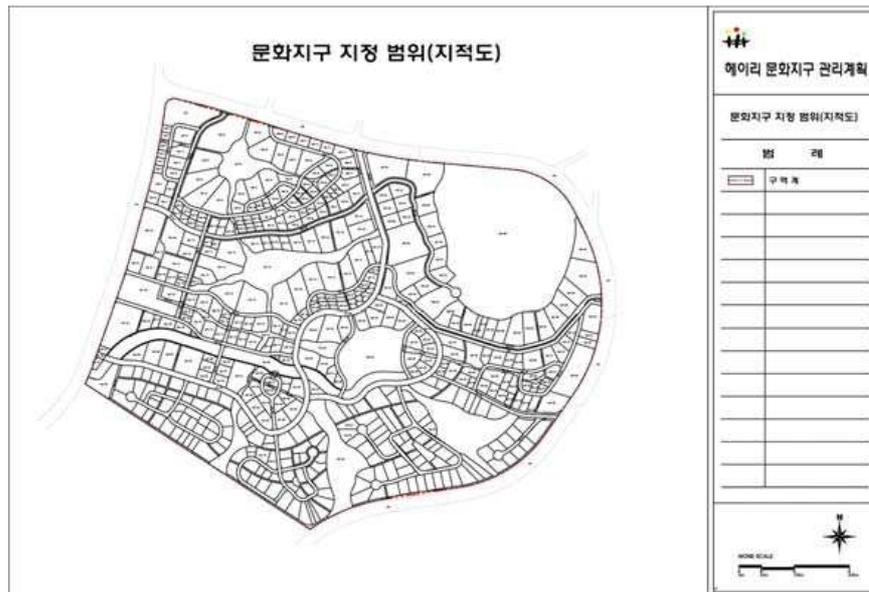
의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음.

[표 8] 문화지구 지정현황

문화지구명	지정사유	면적
인사동 (2002.4.24)	인사동의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육성을 통해 역사 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의 계획적 조성	175,743㎡
대학로 (2004.5.8)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문화 산실로서 대학로 보존, 지역 내 밀집한 (소)공연장의 보호·육성 및 이를 통한 다양한 연극 창출,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지역발전 유도 및 지역 활성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창출 및 문화공간화를 위하여 조성	446,569㎡
헤이리 (2009.2.6)	지구내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육성을 통한 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 환경의 계획적 조성	505,891㎡
인천개항장 (2010.2.1)	인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대표하는 인천 개항장의 독특한 다국적 도시경관과 근대건축물의 자산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경제활성화 및 환황해권의 대표적인 국제 개항문화체험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지정	537,114㎡

② 지정범위

- 전체 통일동산 지역 내 헤이리 아트밸리 조성사업 지역으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번지 일원, 505,891㎡가 지정면적임.



[그림 5] 헤이리 문화지구 지정범위

### ③ 권장시설

- 헤이리 내 전시실 및 각종 문화시설 등 헤이리 문화지구의 정체성을 보호·육성·활성화를 위한 권장시설을 선정하였음.

<표 11> 헤이리 권장시설

구 분	대 상
전시관련 업종 및 시설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화랑 등
영업시설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
문화시설	공연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정체성 보존 및 보호	문화예술분야 학교, 학원, 문화예술 관련 사무소, 창작시설
	국제교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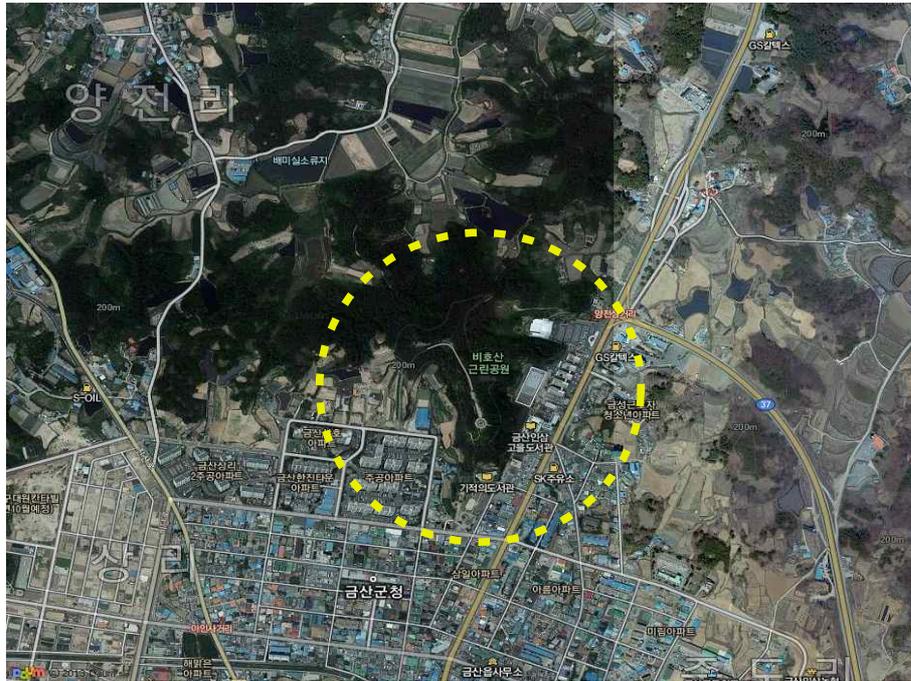
### ③ 금산 다락원 문화지구 조성배경 및 지정범위

#### ■ 조성배경

- 금산군 다락원 문화지구는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의 육성 및 활성화와 금산읍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이에 따라 금산군의 기존 문화예술시설의 이용을 촉진을 위한 기능 강화와 신규 시설·공간의 유치하여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 지정범위

- 기존 문화예술시설과 공간으로 다락원, 금산향토관, 인삼고을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청산회관, 농민의 집, 여성의 집 등을 포함
- 또한, 주변의 양전삼거리(사거리로 개선예정)와 외곽순환도로, 비호산근린공원, 금산인삼탐, 금산향교뿐만 아니라 금산로와 비단로, 무금로 등 문화거리 조성 지역에 포함되는 공간도 지정범위로 함



#### ④ 금산 다락원 문화지구 조성방안

##### ■ 기존 도시계획과 연계한 문화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

- 금산읍의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경우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도시관리 및 공공디자인, 문화시설의 조성 및 관리 운영, 민간참여 등을 고려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 금산 다락원 문화지구 관련 조례의 제정

-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의 타당성이 있을 경우 금산군 다락원 문화지구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산군의 충남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 ■ 금산 다락원 문화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 문화지구 조성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고 금산군 조례에 의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문화지구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문화지구 조성을 위한 지정을 받도록 함.

## ■ 문화지구 조성사업의 단계별 추진

- 금산읍 다락원 주변은 많은 문화예술시설과 공간, 비호산 근린공원 등이 입지하고, 임희재문화관 건립(예정)과 양전 4거리 조성 및 순환도로 건설 등이 추진됨에 따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일정의 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문화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금산군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문화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문화지구 지정사업은 이 이외에도 문화거리 조성사업, 문화특구 조성사업 등이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② 금산인삼 공립박물관 및 임희재 문학관 건립

### ① 여건과 과제

#### ■ 여건 및 현황

- 금산군은 군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다락원과 금산향토관, 도서관, 문화원,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등이 금산로 1559번지 일원에 집중 입지하고 있음.
- 또한, 임희재문학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 비호산근린공원과 금산인삼탑, 금산향교 등이 바로 인접함.
- 더불어 동일한 지구내에 농업인의 집, 여성의 집과 금산보건소가 있어 다수의 군민들의 방문을 하는 지역임
- 특히, 양전삼거리는 대전에서 금산을 진입하는 출입구로서 사거리 개선사업과 함께 금산읍 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되는 신규 개발지구로 발전이 될 것임

#### ■ 과제

- 금산군의 문화예술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문화예술활동의 거점기능이 부족하여 활성화가 필요함.
- 기존의 문화예술시설 중 군민과 관광객을 유입하는 대표적 문화시설과 문화활

동에 필요한 중심기능과 거점시설의 조성이 요구됨.

- 각각의 문화예술시설들이 특화되면서 경쟁력을 가져 군민들이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각 문화예술 시설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함.

## ② 사업내용

### ■ 금산인삼 공립박물관 건립

- 배경 : 금산군의 유구한 역사유적과 지역 향토특산물인 인삼과 약초에 대한 전시시설과 학습공간 조성으로 지역문화 가치의 보존 및 전승 필요
- 목적 : 금산인삼에 대한 역사와 재배농법 및 농기구, 인삼제품 등의 향토특산물에 대한 전시와 학습,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향토문화의 전당 육성
- 장소 : 금산읍 양전리 금산향토관 일원
- 전시내용 : 금산인삼관, 역사유적관, 향토민속관, 인삼농사체험장 등
- 사업비 : 150억원(추정사업비)

### ■ 임희재 문학관 건립 추진

- 배경 : 금산이 낳은 대중문학가 임희재에 대한 재조명과 지역의 문학작품에 대한 가치제고와 대중문학 활성화의 장 마련 필요
- 목적 : 금산 출신의 대중문학가를 통한 문학관에 창작 공간 및 예술제, 북카페와 문학사랑방 등을 설치하여 향토문학인큐베이터의 산실로 육성
- 장소 : 금산읍 양전리 금산향토관 일원
- 시설내용 : 임희재기념관, 창작공간, 영화관, 북카페, 영사실, 세미나실, 책방, 문학사랑방 등
- 사업비 : 30억원(추정사업비)

## ③ 추진계획

### ■ 추진방향

- 금산군 문화예술시설과 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후 부문별 추진사업을 선정
- 해당 부서 및 담당자간 사업논의 및 향후 추진방향 협의
- 중앙부처 연계사업 검토와 예산확보 방안 모색
  - \* 행복생활권, 문화지구 조성사업 등
- 현재 문화예술시설 운영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추진 실시

### ■ 사업추진 방식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발굴·구상에 적용
- 금산 인삼공립박물관 및 임희재 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수행
- 문화지구 지정사업과 연계 추진
- 각 문화예술시설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③ 문화예술 광장과 문화카페 조성 및 문화이벤트 정기 개최

### ① 여건과 과제

#### ■ 여건 및 현황

- 금산읍 금산로에 다락원 주변은 금산향토관과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등 다양한 전시·박물관 등이 있으나 위치가 떨어져 있어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
- 또한, 문화예술시설이 입지한 지구에는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 및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이 없어 관람객들이 불편하고, 문화공간으로 기능도 미흡
- 이에, 문화예술시설과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의 활동과 만남의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광장과 문화카페의 조성이 필요함.
- 뿐만아니라, 금산읍 문화예술지구에 대한 홍보·마케팅과 금산군민들의 문화활동에 축제로 이루어지도록 기존 문화행사를 군민 문화이벤트로 개최해야함

## ② 사업내용

### ■ 문화예술광장 및 문화카페 조성

- 사업목적 : 금산읍 다락원 및 주변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심기능광장을 조성하여 다목적 문화예술광장으로 활용
- 장 소 : 금산향토관 앞 주차장 및 주변(양전 사거리 개선사업 연계)
- 사업내용
  - 문화광장 조성 : 야외공연장, 음악분수 및 정원, 만남의 공간 등
    - \* 랜드마크인 인삼상징물은 현재의 조형물을 활용하여 재배치.
  - 문화카페 : 패스트푸드 및 커피 등 식음료 판매점 등
  - 문화 및 이벤트 소규모 행사 무대 등
- 사 업 비 : 30억원(추정)

### ■ 비단외 문화예술제 정기 개최

- 행사목적 : 금산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회확대와 기 조성된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 기능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문화이벤트를 정기 개최
- 장 소 : 금산 향토관 앞 문화광장 조성지(계획)
- 행사내용
  - 금산 문화예술인 장르별 창작 경연대회 개최
  - 금산군 평생학습 문화예술분야 경연이벤트 개최
  - 다락원 대공연 행사개최 : 국제행사, 국내 대규모 문화행사
  - 문화시설 및 공간, 도서관별 각종 행사 및 전시회 개최
  - 금산 읍면별 농악 친선대회, 물폐기농요, 농바우끄시기 시연 등
- 사 업 비 : 3억원

### ③ 추진계획

#### ■ 추진방향

- 기존에 다락원을 중심으로 가을에 개최되는 금산군 문화예술행사를 통합적인 문화예술제로 개최 추진
- 행사주관은 금산군 문화예술인과 단체 주관으로 개최
- 인접한 논산시와 계룡시, 대전광역시와 연계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민(금산군 우호협력 MOU체결-2013년 11월 29일) 연계 초청 문화예술행사로 개최

#### ■ 사업추진 방식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추진(논산시, 계룡시 등)
- 문화예술광장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
- 문화예술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경연행사로 추진
- 각 문화예술시설의 행사와 전시 등 동시 개최 및 금산군 평생학습교육 경연잔치 형태로 개최

## ④ 문화거리 및 주변 관광지 연계 슬래길 조성

### ① 여건과 과제

#### ■ 여건 및 현황

- 다락원과 금산향토관, 도서관,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등의 각각의 문화시설과 공간은 동일지구내에 있으면서도 상호 연결동선이 미흡함
- 특히, 금산읍의 시내중심지와 주민들의 주거지 뿐만아니라 금산인삼약초시장과

인삼종합전시관 등과 보행중심 연결동선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 나아가 인접해 있는 비호산근린공원과 위성통신지구국, 칠백의총 등 여가공간 및 관광지와 연결한 도보길 여행코스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활성화가 필요.

## ② 사업내용

### ■ 문화예술 보행 전용거리 조성

- 사업목적 : 금산읍 시내와 주거지, 관광지로부터 보행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행전용거리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시설의 이용을 촉진
- 장 소 : 금산 다락원 지구내 및 연계 2개 구간
- 사업내용
  - 다락원 지구 내 : 금산향교-비호산근린공원-기적의도서관/임삼고을도서관-청산회관-다락원/문화원-금산향토관 등 연결 보행로 조성
  - 비단로 코스 : 다락원 지구-주공아파트-한진타운아파트-상리2주공아파트-아인지구 연결 보행로 조성
  - 비범로/비선로 코스 : 다락원 지구-비범로(아름아파트)-금산터미널-중부시장-인삼로-비선로-큰다리교-금산천길-금산시장-남산공원
- 사업비 : 15억원(추정)

### ■ 관광지 연계 슬래길 코스 조성

- 사업목적 :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문화예술지구에서 여가공간과 관광지로 연결하는 보행 슬래길 코스를 제공하여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계기 마련
- 장 소 : 다락원 지구 연계 2개 구간
- 사업내용
  - 비호산 슬래길 : 다락원 지구-금산향교-금산인삼탐-비호산근린공원-배미실소류지-위성통신지구국-칠백의총-금성산슬래길(연계)
  - 비단로 슬래길 : 다락원 지구-비범로(아름아파트)-한국지엠서비스(비단로)-금산중학교-탑선리석탑-금산초등학교-흰털바위공원-금산인삼

## 전시관/인삼약초시장

□ 사업비 : 10억원(추정)

### ③ 추진계획

#### ■ 추진방향

- 기존 금산읍 보행로와 거리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다락원지구와 연계하는 문화예술 보행전용거리와 숲래길 조성사업 추진
- 기존 차도와 연결되는 보도구간에 가로수식재, 간판개선사업, 쌈지공원, 꽃길조성, 휴게편익시설 등을 조성

#### ■ 사업추진 방식

- 도시재생사업의 근린재생사업과 연계 추진
- 거리환경개선 사업 연계 추진
- 주민 및 상가 참여형 내집앞 가꾸기 사업 추진
- 금산읍 문화예술 중점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

## ⑤ 지구촌박물관 이전 및 금산학 문화아카데미 운영

### ① 여건과 과제

#### ■ 여건 및 현황

- 금산로변 청산회관 2, 3층에는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에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민족들의 생활모습을 관람할 수 있도록 2개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음.
-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은 각국 생활문화를 볼 수 있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접근성의 제약과 전시실의 분리로 다수의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

- 이에 다른 장소에 다문화회관 또는 공립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이전을 하여 각 민족들의 다양한 생활모습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그리고, 이전한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청산회관 건물에는 금산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금산학 관련 강의프로그램이 운영이 필요함.

## ② 사업내용

### ■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이전

- 사업목적 : 지구촌생활민속관을 다문화시대에 맞도록 다문화회관(건립후) 또는 공립박물관을 건립하여 이전
- 장 소 : 금산향토관 주변(양전 사거리 개선사업 연계)
- 사업내용
  - 지구촌생활민속관 : 전시실 구성
    - \* 다문화회관(건립시) 또는 공립박물관(건립시)
  - 세계문화 및 여행체험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카페 시설 및 공간 조성 운영
- 사 업 비 : 7억원(추정)

### ■ 금산학 문화아카데미 개설 운영

- 사업목적 :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이전시 2, 3층은 금산학 문화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의 금산문화에 대한 인식과 애착심 제고
- 장 소 : 금산읍 청산회관 내
- 사업내용
  - 금산학 문화아카데미 강의실 설치
  - 금산학 책자 제작 및 강의프로그램 개설과 운영
  - 금산 역사유적 답사기행 프로그램 운영

- 도시민(서울시) 금산 전통문화 교류전 개최

□ 사업비 : 매년 2억원

### ③ 추진계획

#### ■ 추진방향

-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이전과 금산군의 다문화 가정의 어학 및 각국 문화교류를 위한 다문화회관 건립 추진
- 또는, 금산군에 공립박물관 건립시 별도의 주제관으로 지구촌생활민속관의 전 시설을 구성하여 이전 추진
- 금산학 아카데미는 지역문화 정체성과 연계하여 군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교육사업으로 추진

#### ■ 사업추진 방식

- 복지 차원의 다문화회관 건립과 연계 사업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
- 금산학 문화아카데미는 군민 평생학습교육사업 또는 금산문화원에서 금산학 문화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 4.

# 사업추진방안

### 1 사업추진계획

#### ① 추진방향

##### ■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관련 정책의 연계 추진

- 문화예술시설과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관련 정책과 시책들이 다양하므로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함

##### ■ 다각적 사업추진 주체 참여와 재원조달방식의 채택

- 문화예술시설 활성화 사업은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 등 추진주체가 다양하고, 역할이 다양하므로 적합한 사업추진방식을 선택해야함
- 재원조달방식도 중앙의 담당부처와 부서, 금산군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연계사업 다양하므로 다각적인 재원조달방법을 모색해야함

##### ■ 기존 개별 문화예술 사업의 특화 및 통합화

- 금산군의 기존 문화예술시설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화시책과 통합적 네트워크와 문화이벤트 개최로 기능과 마케팅을 강화

#### ② 사업계획

##### ■ 중앙부처의 연계 사업

- 행정안전부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 추진
  - ’12. 8월부터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전행정부)’에 근거해 조성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개선

##### ■ 문화체육관광부 연계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지구 지정관리’ 및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
  - 문화지구 조성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의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 문화거리 조성사업 : 기존 ‘인삼약초예술의 거리’와 ‘역사문화의 거리’등 2개의 사업과 연계 지속 추진

## ■ 문화예술시설 관련 행사의 특화 및 통합화 사업

- 다락원, 문화원, 청산회관, 금산향토관, 도서관 등의 각 문화예술시설 및 공간에서 실시되는 각종 행사의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개최
- 문화예술시설 관련 행사의 통합화를 위한 금산군 문화의 날 지정 운영
  - 문화예술진흥법 : 제16조(문화의 날 설정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하고, 문화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 강연회나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 ③ 투자계획

### ■ 문화지구 지정 및 조성사업

- 문화예술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총 투자비는 150억원임. 각 사업별로는 문화지구 지정 및 조성사업은 2억원, 금산 인삼공립박물관 건립 150억원, 임희재박물관 건립 30억원, 문화예술광장 및 카페조성 30억원, 비단포 문화예술제 정기개최 3억원, 문화거리 및 주변 관광지 연계 술래길 조성 25억원,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이전 및 금산학 문화아카데미 운영 10억원 등임
- 문화지구 지정 및 조성은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수립 후 개별 사업비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업비는 다음 <표 12>와 같음.

<표 12> 투자계획

사업명	사업비(억원)	사업내용
합 계	150	
문화지구 지정 및 조성사업	2	· 금산군 문화지구 지정·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총 사업비는 별도 추정)
금산 인삼공립박물관 건립	150	· 금산인삼역사관, 역사유적관 · 향토민속관, 인삼농사체험관 등
임희재문학관 건립	30	· 임희재기념관, 창작공간, 영화관 · 북카페, 세미나실, 문화사랑방 등
문화예술광장 및 카페조성	30	· 야외공연장, 음악분수 및 조경 · 만남의 공간, 문화카페 등
비단외 문화예술제 정기개최	3	· 문화예술인 창작 경연대회, · 군민 문화예술분야 경연이벤트 등
문화거리 및 주변 관광지 연계 슬래길 조성	25	· 문화예술 보행전용거리 조성 · 관광지 연계 슬래길 코스 조성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이전 및 금산학 문화아카데미 운영	10	· 지구촌 생활민속박물관 이전 · 금산학 문화아카데미 운영(청산회관 내)

## ② 지역 주민참여 방안

### ① 문화예술인과 단체 참여 촉진 방안

#### ■ 금산의 문화예술인 창작센터로 육성

- 금산 문화지구로 지정 및 조성이 되면 금산군 문화예술인들이 금산문화생태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산 문화예술인 창작센터’를 설립 운영

#### ■ 문화예술인이 주관하는 ‘금산군민 문화의 날’ 지정 운영

- 매년 10월 셋째주에 토요일에 금산군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금산 문화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
- 문화의 날 행사는 금산군내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되어 주관하는 행사로 개최하여 금산군 문화생태계를 구축

## ②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 ■ 금산군민 평생학습교육 문화예술 경연대회 정기 개최

- 매년 금산군 문화의 날을 전후로 비단피 문화예술제를 실시하여 금산군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평생학습교육 등의 문화예술 경연대회를 개최

### ■ 금산군민 대상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다락원, 금산문화원, 청산회관, 금산향토관 등을 중심으로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 각 문화예술 관련 시설들의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실시 후 전시회나 공연 등을 실시하여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참여기회 확대

### ■ 문화지구 조성 및 문화예술 활동 서비스와 문화생활환경 제공

- 금산 문화지구내 문화광장과 문화카페, 문화의 거리 조성 등으로 접근성 및 문화활동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문화생활과 전군민 만남의 장소로 육성